

문서번호	3-1-1		
제정일	2010. 03. 01.		
개정일	2021. 01. 19.		
페이지	1/4	관리 부서	사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제32조에 따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 원회("이하 평의원회"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에서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 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6.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평의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의원의 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교원 : 4명
 - 2. 직원 : 1명
 - 3. 조교 : 1명
 - 4. 학생대표 : 2명
 - 5 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등 외부인사 : 3명
 -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의원의 수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선임 기준: 교직원의 경우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이상의 정계를 받지 않은 자 및 외부인사(동문 포함) 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.
 - ④ 자격요건 : 교원과 직원은 교원과 직원 재직자 및 외부인사(동문 포함)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자로 한다.
- ⑤ 관계되는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·의결 에 관여 할 수 없다
- 1.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2.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
- 3.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4. 자기와 증언· 감정·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
- 5. 위원이 되기전에 감사 · 수사 ·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



문서번호	3-1-1		
제정일	2010. 03. 01.		
개정일	2021. 01. 19.		
페이지	2/4	관리 부서	사무처

- ⑥ 위원회의 심의·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,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⑦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- 제4조(평의원 위촉)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단 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교무회의에서 추천 요청한다.

- 1. 교원 :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.
- 2. 직원: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.
- 3. 조교: 조교회의에서 추천한다.
- 3. 학생 :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.
- 4. 동문 : 동문회에서 추천한다.
- 5. 외부인사 : 공개모집 또는 교무회의에서 추천한다.
- 제5조(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
- 제6조(평의원 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- ③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종료일은 학년 종료일로 한다.
- 제7조(자격의 상실)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연수, 안식년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 - 2. 학생평의원은 임기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
 - 3. 외부평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



문서번호	3-1-1		
제정일	2010. 03. 01.		
개정일	2021. 01. 19.		
페이지	3/4	관리 부서	사무처

- 제8조(회의)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 -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이사장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- 3. 재적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- ②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개최 7일전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평의원에게 통지 및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9조(개최 및 의결 정족수) ①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다.
 -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출석 및 자료 요청)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교직원 에 평의원회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회의록 및 비밀유지) ①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및 평의원회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.
 - ② 평의원회 의원은 직무상 습득한 학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해태한 경우 평의원회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**제12조(간사)** ① 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총무팀 직원을 간사로 한다.
 - ②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평의원의 서명을 받은 후 총장 및 평의원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심위위원회에는 관련된 회의록을 통지한다.
- 제13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)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둔다
 - ②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- 제14조(준용 및 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관계법 령, 법인 정관을 준용하되, 이외 운영에 관한 필요나 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 평의원회 의결로 확정한다.



문서번호	3-1-1 2010. 03. 01. 2021. 01. 19.		
제정일			
개정일			
페이지	4/4	관리 부서	사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(구성) 의원의 구성 정수와 제6조(평의원 임기)는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조(구성)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